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6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관련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,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규정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3항 신설
- 2)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 징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 가능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제1항
- 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3) 「의류수거함 일제정비·관리 변경계획」 청소행정과-11112('19.11.15.)구청장 방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0. 4. 16. ~ 5. 6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

: 안 제6조제3항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여 정비(권고)
 <부서의견> 감사담당관의 의견 일부를 수용하며, 안 제6조제3항에서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는 마포구 의류수거함의 운영·관리를 대행하는 자로써 의무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·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상 또는 도로점용료 범위에서 징수하려고 함.

입법예고문안	상 정 안
제6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등)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	제6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등)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한다.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5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5.1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한다.</u>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이 일부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없음.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황인화 (☎ 3153-9215)